

제 2351호
2015. 03. 11.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장 운 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5-13호 : 도시관리계획(복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2
제2015-14호 : 도시관리계획(복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6
제2015-15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0
제2015-17호 : 지적기준점 고시	11

● 공 고

제2015-172호 : 2015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13
제2015-175호 :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
제2015-179호 :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공고	18
제2015-180호 :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19
제2015-184호 :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안)	20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서울특별시중구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13호

도시관리계획(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63호(2005.09.01)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38호(2012.09.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2호(2014.09.04)로 변경결정 고시된 우리구 북창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5년 제1차 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5.02.23)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1일

중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중구 남대문로4가 17-23번지 일원 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 도시기반시설(지하도로)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사항임

2.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사항)

- 도시기반시설(지하도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지하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폭원 (m)	연장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1	도로	지하 도로	남대문로4가 남대문시장 앞	4,063.9 (232)	감)103	3,960.9 (129)	21.2	147	1979.12.26 (서고 제528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 면적 - 획지61 : 129㎡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지하도로 면적은 구적면적이며 추후 측량 등을 통하여 결정

■ 입체적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입체적 결정 규모			비 고	
				구분	높이(m)	면적(㎡)		
폐지	도로	지하 도로	남대문로4가 남대문시장 앞 (남대문로4가 71-3 일대)	지상1층	34.5~41.0 (해발고도)	33.0	지하상가로 출입하는 시설	최초결정일(2012.9.6.) (서고 제2012-238호)
				지하1층	27.3~34.5 (해발고도)	103.0	지하층 연결통로	

○ 도시기반시설(지하도로)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남대문로4가 71-3 일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하도로 면적 변경 - 232㎡ → 129㎡ (감 103㎡) - 지하도로 입체적 결정 폐지 - 지상1층 34.5~41.0(해발고도) 33.0㎡ - 지하1층 27.3~34.5(해발고도) 103.0㎡	서고 제2012-238호(2012.9.6.)로 결정된 남대문 지하상가 1번 출입구(입체적 결정) 이전 및 연결 통로 개설에 대하여,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에서 영업 피해등을 사유로 이전반대를 하고 있어 현 상태대로 유지하고자 변경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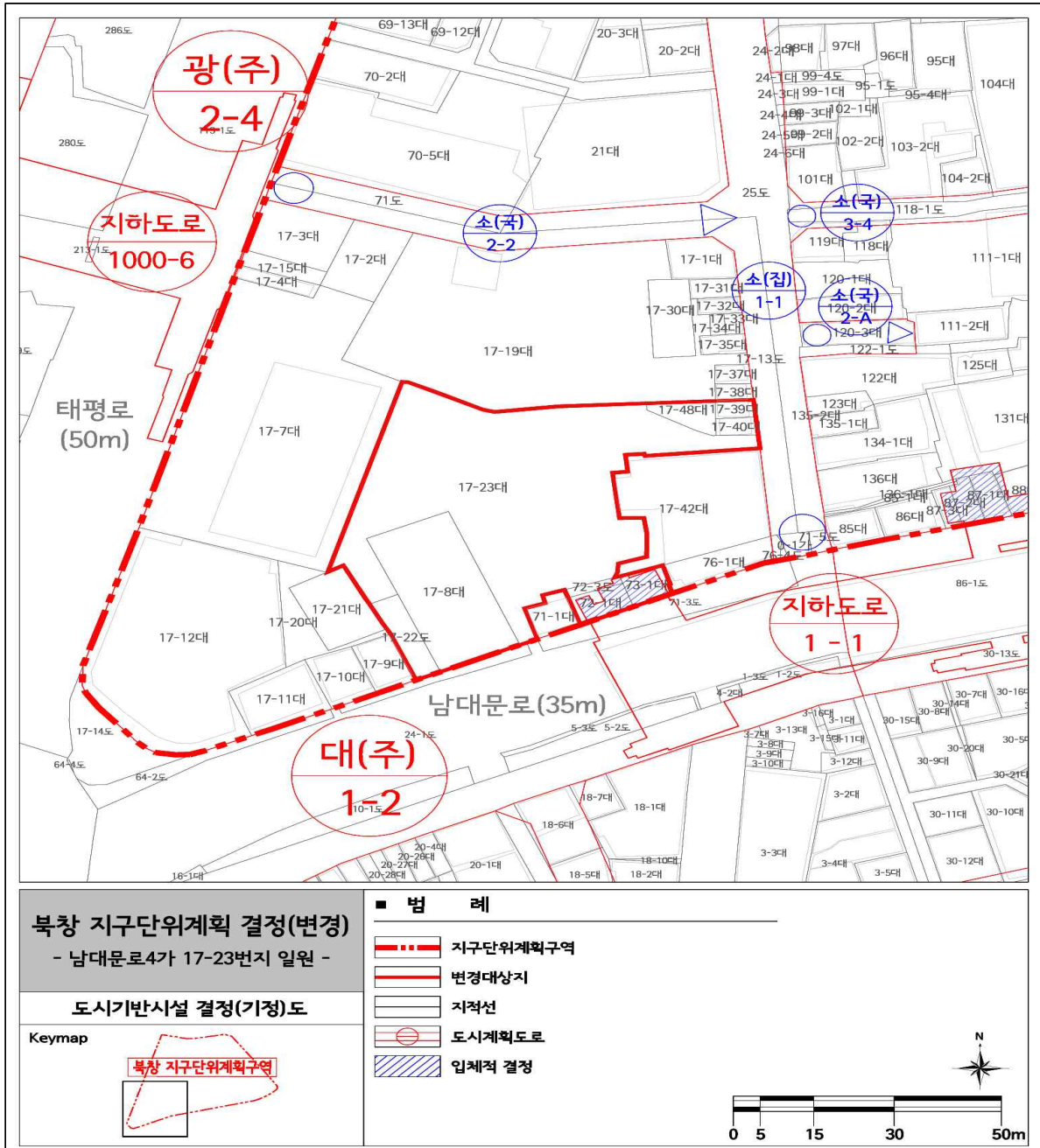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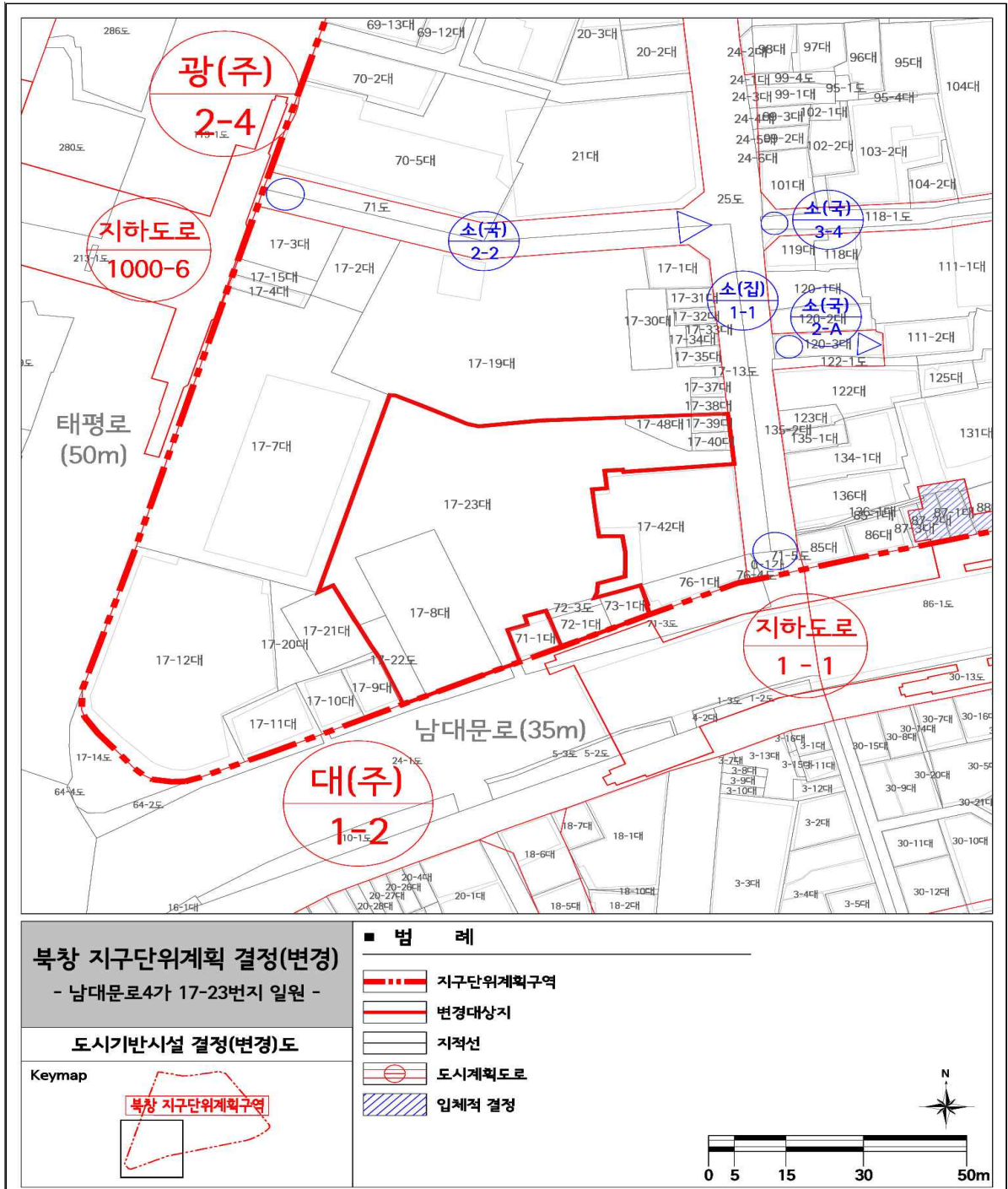
4.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8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 도시관리계획(복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14호

도시관리계획(복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63호(2005.09.01)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2호(2014.09.04)로 변경결정 고시된 우리구 복합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5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5.02.23)를 통해 의결된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1일

중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중구 북창동 17-1번지 일원 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 건축지정선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사항임

2. 복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사항)

- 건축지정선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적 용 구 역	계 획 내 용
기 정	건축지정선	도로경계	• 소로1-1호선변, 소로3-3호선변, 소로3-A호선변 (보행자전용도로)
		1m	• 이면도로변 일부 - 가구1,2 : 태평로2가 58-11~58-4번지 - 가구3,4,5 : 태평로2가 69-1~69-12번지 - 가구4,5 : 북창동 20-5~20-1번지 - 가구9,10 : 북창동 18-1~18-12번지 - 가구11 : 북창동 82~23-2, 94-10, 71-1번지 - 가구13,14 : 북창동 14-5~11-3번지 - 가구16 : 93-37~93-45번지
		2m (도로중심선 으로부터)	- 가구16 : 북창동 94-27~94-38번지

구 분			적 용 구 역	계 획 내 용
변 경	건축지정선	도로경계	• 소로1-1호선변, 소로3-3호선변 일부 , 소로3-A호선변(보행자전용도로)	• 주요 이면가로의 정연한 가로경관 연출, 가로경관 향상
		1m	• 이면도로변 일부 - 가구1,2 : 태평로2가 58-11~58-4번지 - 가구3,4,5 : 태평로2가 69-1~69-12번지 - 가구4,5 : 북창동 20-5~20-1번지 - 가구9,10 : 북창동 17-1, 17-2 , 18-1~18-12번지, - 가구11 : 북창동 82~23-2, 94-10, 71-1번지 - 가구13,14 : 북창동 14-5~11-3번지 - 가구16 : 93-37~93-45번지	• 원활한 보행통행 유도 및 가로 개방감 증대
		2m (도로중심선으로부터)	- 가구16 : 북창동 94-27~94-38번지	

○ 건축지정선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북창동 17-1, 17-2 번지	건축지정선 1m 후퇴	• 북창동 17-1, 17-2, 17-7번지는 2013년 4월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소로3-3호선 도로경계로 건축지정선이 지정되었으나, 해당 도로변은 이미 도로포장 등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현황 여건을 반영하고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건축지정선을 도로경계로부터 1m 후퇴 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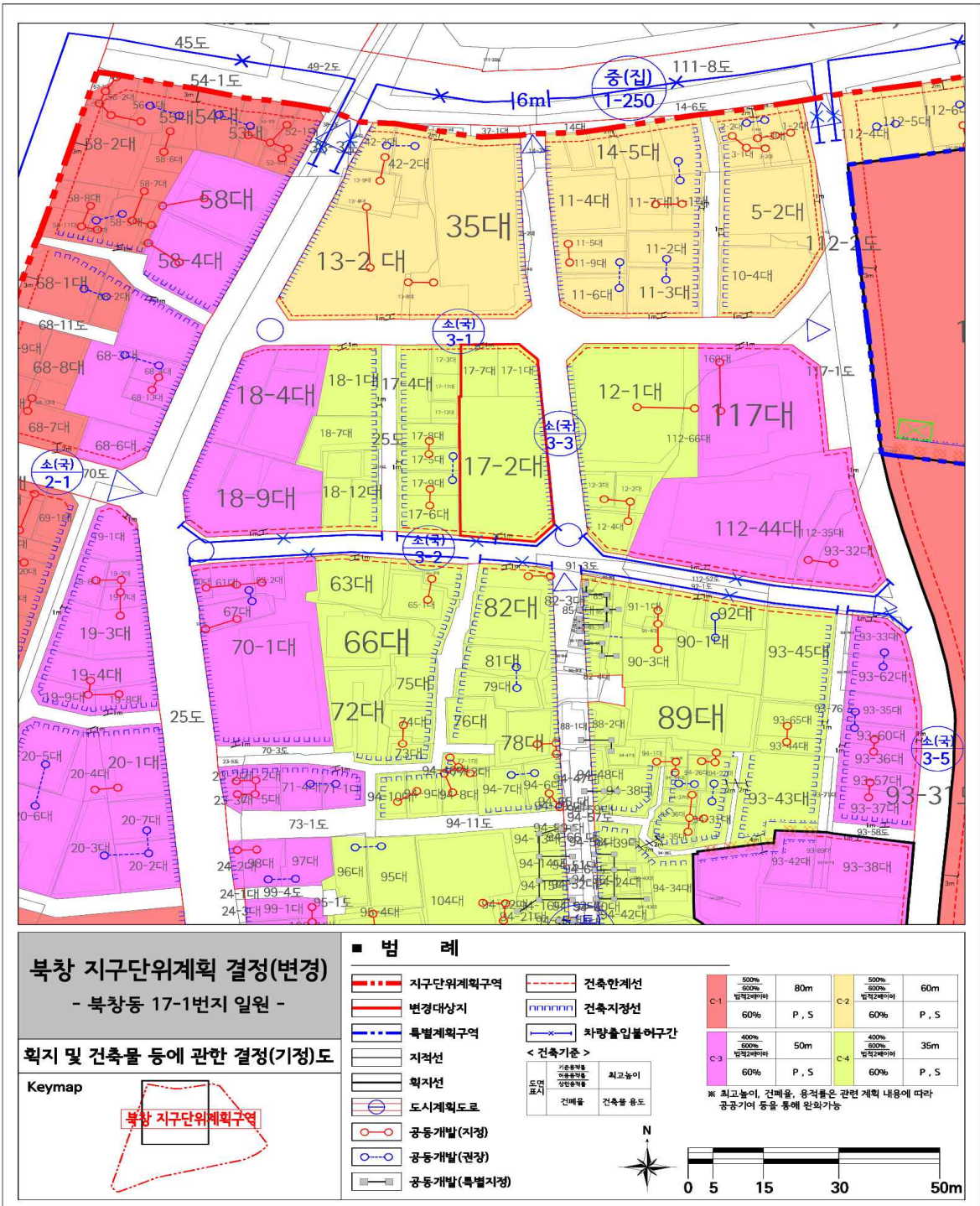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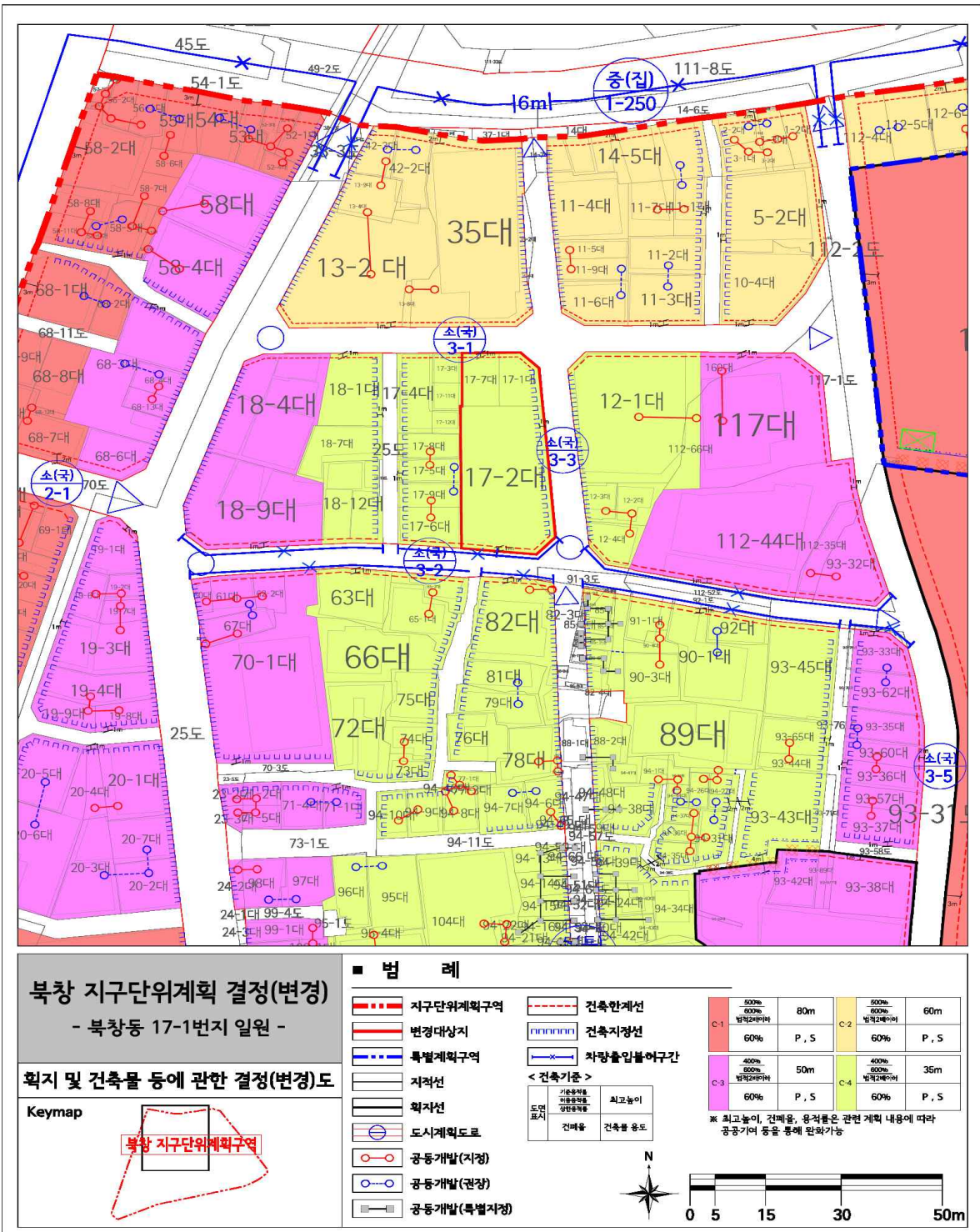
4.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8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압니다.

< 도시관리계획(복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15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나길 11의 2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나길 11	2015. 03. 11.	건물멸실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길 31-11	2015. 03. 11.	건물멸실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길 49-11	2015. 03. 11.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3. 1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17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지적기준점 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기준점 번호	평면좌표(GRS80타원체)		평면좌표(베셀타원체)		소재지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보32	552055.14	201424.39	451749.27	201353.52	황학동 1-1
보33	552095.39	201729.80	451789.53	201658.92	황학동 119
보34	552194.32	202072.97	451888.45	202002.08	황학동 1596-1
보35	552048.14	202076.22	451742.27	202005.33	황학동 1104
9304	552252.73	201730.83	451946.85	201659.95	황학동 73-1
9305	552225.18	201722.77	451919.31	201651.89	황학동 73-3
9306	552176.39	201709.97	451870.52	201639.09	황학동 80
9307	552151.43	201713.49	451845.57	201642.60	황학동 96
9308	552138.62	201716.47	451832.76	201645.57	황학동 97
9309	552115.97	201721.63	451810.11	201650.74	황학동 108
9310	552104.52	201722.69	451798.66	201651.80	황학동 119
9311	552127.76	201742.35	451821.90	201671.47	황학동 1280
9312	552146.83	201741.36	451840.97	201670.47	황학동 1300
9313	552157.78	201764.06	451851.92	201693.18	황학동 1252
9314	552160.44	201775.02	451854.58	201704.13	황학동 1330
9315	552169.60	201782.25	451863.74	201711.36	황학동 1326
9316	552197.08	201748.18	451891.22	201677.28	황학동 1258
9317	552189.32	201741.67	451883.46	201670.77	황학동 1257
9318	552169.22	201748.46	451863.36	201677.56	황학동 1263
9319	552140.08	201764.13	451834.22	201693.23	황학동 1303
9320	552133.17	201772.10	451827.31	201701.21	황학동 1305
9321	552127.29	201782.82	451821.43	201711.92	황학동 1233
9322	552131.18	201785.91	451825.32	201715.02	황학동 1339
9323	552124.07	201799.73	451818.21	201728.84	황학동 1230

기준점 번호	평면좌표(GRS80타원체)		평면좌표(베셀타원체)		소재지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9324	552130.52	201803.84	451824.66	201732.95	황학동 1357
9325	552141.91	201811.26	451836.04	201740.38	황학동 1353
9326	552152.70	201824.26	451846.84	201753.38	황학동 1361
9327	552147.36	201837.57	451841.49	201766.68	황학동 1362
9328	552089.31	201823.88	451783.44	201752.99	황학동 1228
9329	552077.72	201848.96	451771.85	201778.07	황학동 513-1
9330	552224.59	201857.76	451918.71	201786.88	황학동 1749
9331	552230.01	201823.44	451924.13	201752.56	황학동 1782
9332	552242.08	201785.23	451936.19	201714.34	황학동 1760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설치일	2015년 3월 3일	
표지재질	철재	
측량성과보관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지관리과	
비고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성과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172호

2015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5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 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열 랐

- 기 간 : 2015년 3월 11일 ~ 2015년 3월 31일
- 장 소 : 구청 세무1과 및 주민센터 민원실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5년 3월 11일 ~ 2015년 3월 31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택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구청 세무1과 및 주민센터 민원실
- 제출방법 : 구청 세무1과 및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 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문의전화 : 구청 세무1과 과표팀 [☎ 02) 3396 - 5152 ~ 4]

2015.1.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2015.1.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의 사전 열람가격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시·군·구(읍·면·동)에서 열람하시고 필요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2015년 3월 11일 ~ 3월 31일

* 공시 전에 소유자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

- (장소)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의견청취 열람기간과 같음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 (제출방법)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공시가격 열람 후 하단에“의견제출 바로그 기”를 선택 후 의견제출 하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의견제출*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 재검토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 발송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드립니다

* 의견제출인은 처리결과를 우편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4.24~4.30)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175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5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
- 금연지도원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 금연지도원 위촉규정 신설
- 금연지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 마련
-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건강도시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 문의전화 : 3396-6345, FAX : 3396-8884, 메일 : lazy111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179호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공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15년 3월 11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1. 정 리 기 간 : 2015. 3. 11(수) ~ 4. 24(금)

2. 신 고 장 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정 리 내 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 및 거주불명(舊말소)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4. 참 고 사 항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내에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여 드립니다.
- 주민등록 신고를 이중으로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문 의 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180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11.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가. 구의회 부의 안건

구 분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연락처)
조 례 안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체육과 (3396-4673)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 (3396-5412)

나. 기 타

- 상세한 사항은 주관부서 또는 기획예산과 의회법제담당(☎3396-49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184호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5. 3. 1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안)

1. 위탁대상 시설(사업)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사업내용	비 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중구 동호로 8다길 22 중구시설관리공단 3층	244㎡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교육.상담.문화 등 다양한 통합서비스 지원	·건강가다 병합운영 ·선정된 위탁기관 대상 ·아이돌봄지원사업 적격 심사(예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2. 위탁기간 : 2015. 7. 1. ~ 2018. 6. 30. (3년)

3.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를 둔 법인으로서

-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나. 센터장 자격요건

- ①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②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4년 이상 실무경력자
- ③ 관련사업 6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다문화가족지원, 사회복지, 가족지원, 가족상담 등) 종사 경력

4. 신청 제외대상

- 가. 법인대표 및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법인
- 나.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관련법규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
- 다. 영리 및 생계의 방편으로 운영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법인
- 라.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5. 위탁조건

- 가. 법인이나 학교의 경우 정관에 가정(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건강가정 및 다문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 나. 건강가정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센터 운영지침 등 관련규정 준수 의무
- 다. 센터장을 제외한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 의무
- 라.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약정에 의함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가. 공고기간 : 2015. 3. 10. ~ 2015. 3. 23.
- 나. 접수기간 : 2015. 3. 17. ~ 2015. 3. 23.
- 다. 접수장소 : 중구청 여성가족과(1층) 출산장려팀
-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근무시간 내(09:00~18:00) ※토일공휴일 및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 마. 신청서식 :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고시공고란 다운로드

7. 선정기준 및 심의

- 가. 수탁기관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법인대표 및 센터장 적정성 등 종합평가
- 나. 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수탁기관 심의 선정

8. 선정 방법 및 결과 발표

- 가. 신청자는 심의일(추후통보)에 출석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계획 설명(PPT 설명 10분 이내)과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불참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나. 평가기준에 의한 심의결과 최다득점을 받은 신청기관을 위탁기관으로 결정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중이 큰 항목에서 득점을 많이 한 법인으로 결정
- 다. 단독 신청인 경우 재공고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위원회 개최하여 심의결과 평균 70점 이상이면 수탁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 라. 다수 법인이 신청하였다라도 위원회에서 신청법인 전체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재공고
- 마. 선정결과 발표 :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게재

9. 제출 서류

구 분	서류 항목	비 고
구비서류	① 수탁 신청서 ⇒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② 법인(단체)의 등기부등본 1부 ③ 법인 - 정관 및 법인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단체 - 단체등록증 및 정관 회칙 규약 사본 학교 - 등록증 사본, 학교의 회칙 또는 규약, 인감증명서 각 1부 ④ 법인의 조직 및 운영현황 관련 서류 1부 ⑤ 최근 3년간 법인 회계감사 결과 서류 1부 ⑥ 법인대표자 및 센터장의 이력서(경력증명 포함) 및 자격 관련 증명서 각 1부 ⑦ 향후 3년간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사업계획서(예산계획서 포함) 1부 ⑧ 가족관련사업 및 다문화가족관련사업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⑨ 자부담금 승낙서 1부 ⑩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로 함(불가피하게 이전일로 제출시 사유서 첨부)	
수량 규격	가. 신청서류는 본보고서와 요약보고서 2권으로 작성(전산파일 CD 1부 제출) - 본보고서 : 100쪽이내 작성, 10부(원본1부, 사본9부) - 요약보고서 : 15쪽이내 작성, 10부(원본1부, 사본9부) 나. 10부 모두 목차 포함 작성하되,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 표기하며, 좌철 제본하고 항목 별 라벨 부착하여 제출	

10.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나. 신청 접수현황, 위원회 인적사항 등 구성, 심의내용 및 위원별 배점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 중구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선정을 무효로 함
- 라. 선정된 기관은 지정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조건에 명시된 의무 이행
- 마. 선정된 기관이 기일 내에 약정체결을 이행하지 않을 시 위탁운영기관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 위탁신청 기관과 약정체결 할 수 있음
- 바.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사. 모집공고 내용이 변경될 경우 중구 홈페이지에 변경사항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보
- 아.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구 결정에 따라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여성가족과 (담당 ☎ 3396-5433)로 문의바람